

【 입찰 자 유 의 서 】

■ 건 명 : 칼트로지스부산(주),칼트로지스BUD(주), 칼트로지스&SKU(주)
전기안전 관리대행 계약

■ 입찰일시 : 2020. 12. 28.(월)

■ 장 소 : 경남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16-15 (용원동)
칼트로지스부산(주) 2층 회의실

칼트로지스부산(주)
칼트로지스BUD(주)
칼트로지스&SKU(주)

입찰 자유 의 서

본 입찰자 유의서는 칼트로지스부산(주),칼트로지스BUD(주),칼트로지스&SKU(주)(이하 “당사”라 한다)가 시행하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계약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 1 장 입찰자 유의사항

제 1 조 (발주 대상 및 공사기한)

- (1) 발주대상은 “당사”가 제공하는 입찰 관련 요청서와 입찰 참여사가 제출하는 제안서 및 기타 관련서류에 의한다.
- (2) 전체 계약기간은 2021. 01. 01 ~ 2021. 12. 31까지로 한다.

제 2 조 (입찰등록서류)

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후 “당사”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“칼트로지스부산(주)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16-15(용원동))

- | | |
|---|------|
| 1. 입찰참가신청서 및 협약서 (당 “칼트로지스” 소정양식) | 각 1통 |
| 2.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| 각 1통 |
| 3. 사업자등록증 | 각 1통 |
| 4. 입찰참가자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 | 각 1통 |
| 5. 대리인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| 각 1통 |
| 6. 실적증명서(발주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) | 각 1통 |
| 7. 참가자 신분증 사본 | 각 1통 |
| 8.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| 각 1통 |
| 9. 입찰보증금 : 총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| |

제 3 조 (입찰보증금)

- (1)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 시 입찰금액의 10/100 이상의 입찰금액을 현금 [이하 “체신관서”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(이하“은행”이라 한다) 발행 자기앞 수표 포함]으로 납부한다. 다

만,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.

1. 은행의 지급보증서
2. “당사”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

제 4 조 (입찰보증금의 처리)

- (1)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
- (2)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 “당사”에 귀속시킨다.

제 5 조 (입찰서의 작성)

- (1) 입찰서는 당 “당사”의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은 제1조의 입찰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제세금(부가가치세 등)을 포함한 총액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
- (2)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.
- (3) 입찰서의 금액 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에 의한다.

제 6 조 (입찰서의 제출)

- (1)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며 당 “당사”소정 양식에 의한다.
- (2) 입찰서는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봉합된 봉투 후면에 입찰자 상호를 기재하여 상, 중, 하 3개소에 날인한다.
- (3) 입찰서 제출 시, 법인인감(또는 사용인감계와 일치하는 사용인감)이 날인된 제안서 각1부를 입찰서와 같이 봉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(4) 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교환,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.

제 8조 (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)

- (1) 입찰방식은 다음과 같다
 - 가. 지명 경쟁 입찰
 - 나. 당사가 선정한 입찰 참여 희망 업체가 당사의 요구사항에 맞춰 입찰 (단, 예정가격 이하여야 한다)

- (2)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입찰 방법에 따라 내부 평가 후 당일 업체에 입찰 결과 발표 단, 낙찰 순위가 동일한 경우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“당사” 예정가격 내에 합의되면 낙찰자로 선정한다.

제 9 조 (입찰의 성립)

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.

제 10 조 (입찰의 무효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.

1.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
2.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
3.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
4.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
5.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
6.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
7.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
8.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 또는 관계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
9.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
10.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입찰

제 11 조 (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한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.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등을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품의 품질, 수량을 부정 납품한 자
3.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
4.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
5. “당사”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
6.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,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
7.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

8.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.
9.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
10.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

제 12 조 (입찰사항의 변경 등)

“당사”는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.

제 2 장 계 약 일 반 사 항

제 13 조 (계약의 체결)

- (1) 낙찰자는 낙찰일 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.
- (2)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.
단, “당사”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14 조 (계약이행보증금)

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“당사”에 계약금액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 [이하“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(이하“은행”이라 한다) 발행 자기앞 수표 포함] 또는 제3조 제1,2호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(계약서 체결후2일 이내)

제 15 조 (차액보증금)

- (1)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이하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제 3조의 방법으로 납부한다.
- (2)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한다.

제 16 조 (대금지급)

계약기간중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. (단,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대금지급에 대해 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체결한 경우, 계약서 내용을 우선하여 따른다.)

제 17 조 (계약기간중 변동)

(1)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8 조 (물가변동)

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19 조 (계약의 해제 및 해지)

“당사”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 없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
2. 계약자의 거소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이 한 때
3. 2회 이상 검사에 불합격 한 때
4. “당사”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제출서류등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지연시켰을 때
5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자가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을 때
6. “당사”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
7.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제 3 장 기 타 사 항

제 20 조 (손해배상)

(1) 낙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불이행,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“당사”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.

(2) 계약기간 중 낙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, 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,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낙찰자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21 조 (하도급 금지)

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.

다만, “당사”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22 조 (관계서류의 속지)

입찰자는 “당사”가 정한 현장설명서, 입찰자유의서, 관련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과 관련된 문서 등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당사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 23 조 (계약문서)

계약문서는 계약서, 입찰자유의서, 현장설명서, 기타 계약에 관한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.

제 24 조 (준용규정)

본 유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“당사”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고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.(계속된 분쟁시 “당사”의 의견에 따른다)

제 25 조 (입찰조건의 변경)

관련 서류상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문의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은 입찰자의 책임이라 할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제 29 조 (복제 또는 타인에의 대여)

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“당사”의 승인 없이 복제 또는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다.

제 30 조 (조문의 제목 해석)

본 유의서의 각 조문의 제목은 독립하여 효력이 없다.